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 점검 사항

2026.11.24

I. 들어가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회사가 주주의 권리, 이사회, 감사기구 등 지배구조 현황을 핵심원칙 10개와 세부원칙 28개에 비추어 공시하는 보고서입니다. 회사는 원칙별로 준수 여부를 밝히고, 준수하지 못한 부분은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준수 아니면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 이 보고서는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ESG 등급 평가 등 투자 판단의 기초 자료로도 쓰입니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 사항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나, 이후 공시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면서 2026년부터는 모든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공시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매년 5. 31.까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2026. 11. 6.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개정 내용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5년 이후 세 차례의 상법 개정으로 바뀐 제도를 기재항목에 반영하고, 중복상장·유상증자 과정의 주주보호와 배당·자기주식 등 주주환원에 관한 공시를 보완한 것입니다. 개정의 핵심은 기재항목을 늘린 것 자체보다 이사회 구성·자본거래·배당·자기주식에 관하여 회사가 실제로 내린 결정과 그 사유를 보고서에 설명하도록 한 데 있습니다.개정 가이드라인은 **2027년에 제출하는 보고서**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개정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회사가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을 짚어 드립니다.

II. 개정 내용 한눈에 보기

개정 가이드라인 원문은 한국거래소 KIND(kind.krx.co.kr)의 '정보실 →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분야별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야별 개정 내용

분야	개정 내용(관련 항목)
집중투표제· 이사회 구성	집중투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이사의 임기·수 조정 등)의 내용과 사유(4-③)

	집중투표 대상 안건의 결의 결과를 의결권 수 기준으로 기재(1-②), 감사위원별 분리선출 여부(9-①)
자본거래·주주보호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행된 합병·분할(물적분할, 분할 후 자회사 상장 포함) 등에 관한 주주보호 정책 관련 공정성 평가 절차·소액주주 손해 방지 조치·주주와의 소통 절차 명시, (2-③ 가.·나.)
	유상증자가 있었거나 계획이 공시된 경우 제3자배정 여부, 증자 규모와 비율, 할인율, 자금사용목적, 지배주주 취득 여부, 소액주주 등의 이해 고려 여부(2-③ 라.)
	보고서 제출시점까지 시행된 주식연계 자본조달 시 소액주주 이해 고려 여부와 지배주주 변동 내용 명시(2-③ 다.)
	2-③ 원칙에 '전체 주주의 이해 고려' 추가, 주주 간 이해상충 사안의 전체 주주 이익 고려 여부(7-① 나.)
주주총회 정보·일정	사업보고서 제출일, 제출일부터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 주주총회 2주 전까지 미제출 시 사유와 향후 계획(1-①)
	전자주주총회 개최 여부(1-②)
배당·자기주식	정기 배당결정을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정기주주총회의 주주제안권 기한까지 공시하였는지 여부, 예측가능성 제공일 항목 신설(1-④)
	주주환원정책 변경 시 종전 정책과의 차이(1-④)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취득한 자기주식의 취득·소각·미소각 수량과 미소각 사유(신탁 등 실질 소유분 포함),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여부(1-⑤)
용어·기준	'4주'→'4주간(間) 전 소집공고', '회계연도'→'사업연도', '의결권 기준일 관련 정관개정' 명시(1-②), '사외이사'→'독립이사(4-③)', '의사록 또는 녹취록'(7-②), '(자율)공시 여부' 등

자본거래·주주보호 분야에서는 세부원칙 2 ③의 원칙 문언에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주주의 이해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세부원칙 7 ①에도 주주 간 이해상충 사안에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는지를 묻는 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의 공평한 대우를 명시한 상법 제382조의3의 취지를 공시항목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기업가치 제고 계획 항목의 문구는 '자율공시 여부'에서 '(자율)공시 여부'로 바뀌었습니다. 거래소는 이를 기준 명료화·자구 정비 사항으로 분류하였으나, 저PBR 기업 공표제도 (2026. 8. 20.자 세종 뉴스레터 「저PBR기업 공표제도 세부기준(안) 발표에 대한 상장기업의 대응 전략」 참조)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려는 최근 입법 논의를 함께 고려하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III. 실무상 시사점

1. 공통

신설 또는 보완된 기재항목 상당수가 '공시대상기간 개시시점(2026. 1. 1.)부터 보고서 제출시점까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미 내린 결정

은 물론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후에 내릴 결정도 그대로 보고서에 기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정의 이유와 판단 과정은 나중에 다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결정할 때마다 그 근거를 이사회 의사록이나 검토 자료에 남겨 두어야 합니다. 3월 하순에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회사라면 주요 일정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표2>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후 주요 일정(예시)

시기	주요 일정
2026년 중	이사 수·임기 조정, 자기주식 취득·소각, 유상증자·분할 등 주요 결정(모두 보고서 기재 대상), 외부감사인과 감사 일정 협의
2027년 2월 초·중순	정기 배당결정 공시(주주제안·집중투표 청구 기한인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날의 6주 전까지)
2월 하순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핵심지표 '4주간 전 소집공고' 기준)
3월 중순	감사보고서 수령, 사업보고서 제출(주주총회 2주 전까지)
3월 하순	정기주주총회
5. 31.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제출

※ 직전 연도와 같이 3월 하순에 정기주주총회를 여는 회사를 가정한 예시이며, 실제 시한은 회사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집중투표제

유의사항 **2026. 1. 1. 이후 이사의 수나 임기를 조정하는 등 집중투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을 하였다면 그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이미 변경한 회사는 사유를 정리해 두고,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 관련 안건을 올리려는 회사는 안건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변경 사유와 집중투표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2025. 9. 9. 개정된 상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542조의7 제3항). 이 규정은 2026. 9. 10. 이후 최초로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상법 부칙(법률 제21044호, 2025. 9. 9.) 제2조). 보도자료는 일부 상장회사가 이사의 수를 줄이거나 임기를 조정해 이 의무를 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이번 항목 개정의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기재 대상 기간은 2026. 1. 1.부터 시작하므로, 2026년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미 이사 정원을 줄이거나 시차 임기제를 도입한 경우에도 그 내용과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집중투표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의 예로 이사의 수와 임기 조정을 들고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적용되므로, 임기 만료 시기를 나누는 경우처럼 한 번에 선임되는 이사의 수를 줄이는 변경은 회사가 밝힌 목적과 관계없이 기재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관상 이사 정원의 상한만 바꾸고 실제 이사 수는 그대로 두는 경우는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지만, 장래에 선임할 수 있는 이사의 수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2027년 정기주주총회나 추후 개최될 주주총회에 이사회 구성을 바꾸는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회사는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자본거래

유의사항 **분할 후 자회사 상장과 유상증자에 관한 주주보호 기재가 강화되었고, 보고서 제출 직전에 공시한 계획까지 기재 대상이 되므로, 계획을 공시하기 전에 주주보호 절차를 정해 두어야 합니다.**

보도자료는 개정 배경으로 중복상장과 유상증자에서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온 점을 들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종전부터 합병·분할(물적분할, 분할 후 자회사 상장 포함) 등이 완료된 경우뿐 아니라 수시공시·공정공시 등으로 계획이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도 이미 시행한 주주보호 조치와 함께 시행할 예정인 조치를 적도록 하였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기재 기간이 보고서 제출시점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새로 마련된 유상증자 항목도 같은 구조여서, 배정 방식과 관계없이 유상증자를 하였거나 그 계획이 알려진 경우에는 제3자배정 여부, 증자 규모와 비율, 할인율, 자금사용목적, 지배주주의 취득 여부와 함께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고려하였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검토 중'이라는 취지의 조회공시 답변이나 기업설명회 자료로 추진 방향만 공개된 단계도 '계획되어 수시공시·공정공시 등을 통해 시장에 알려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므로 사안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주주보호 정책에는 주주 간 이해상충이 생길 수 있는 사안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절차, 소액주주의 손해가 예상될 때 이를 방지하는 조치, 의사결정에 관하여 주주와 소통하는 절차를 명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거래 검토 단계에서 그러한 절차 및 조치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라면 2026. 8. 3.부터 시행된 거래소의 중복상장 관련 상장규정과 「중복상장 가이드라인」에 따른 모회사 이사회의 의무와 주주동의 절차도 함께 점검하여, 보고서 기재 내용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사업보고서 제출

유의사항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그 사유와 향후 계획을 보고서에 설명하여야 하므로, 외부감사 일정을 앞당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상장회사 대부분이 주주총회 1주일 전 무렵에야 사업보고서를 공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 항목을 개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가이드라인은 주주총회별로 사업보고서 제출일과 주주총회일까지의 기간을 적도록 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1항)이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기업들의 이행 현황을 보아 '주주총회 2주 전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를 핵심지표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무상 주의하셔야 할 점은 외부감사 일정입니다. 현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상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은 정기총회 1주 전이므로(제27조 제1항 제1호), 이 기한에 맞춘 일정으로는 주주총회 2주 전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을 정기총회 6주 전으로 앞당기는 외부감사법 개정안(2026. 6. 15. 발의)도 나와 있으므로, 가급적 연내에 외부감사인과 감사 종료 시점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배당·자기주식

유의사항 **정기 배당결정을 주주제안 기한까지 공시하였는지와 최근 3개 사업연도 자기주식 현황을 새로 적어야 합니다. 주주제안 기한은 직전 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날의 6주 전이므로, 결산·배당 일정을 앞당겨야 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배당 정보가 주주제안 기한인 주주총회 6주 전보다 늦게 공개되어 주주가 배당에 관해 제안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개정 배경으로 들고 있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정기 배당결정을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이전'에 공시하였는지를 기재하도록 하면서, 각주에서 이 시한이 '상법 제363조의2에 따른 정기주주총회의 주주제안권 기한'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정기주주총회의 경우 기준일

을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로 정하므로, 2027년 정기주주총회일을 늦추더라도 시한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결산 일정에 따라서는 배당결정 이사회를 앞당겨야 할 수 있으며, 특히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배당을 정하는 회사(상법 제449조의2, 제462조 제2항 단서)는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받은 후에야 해당 이사회 결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기한을 지킬 수 있는지 미리 검토하여야 합니다.

자기주식은 신탁계약을 통해 취득한 주식을 포함하여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취득한 내역(취득기간, 종류, 수량, 금액, 목적, 소각수량)과 미소각 수량·사유,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의 주주총회 승인 여부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2026. 3. 6. 시행된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습니다(제341조의4). 기존 보유분에도 유예기간을 두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상법 부칙(법률 제21448호, 2026. 3. 6.) 제2조). 따라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려는 회사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2027년 정기주주총회에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을 올릴지를 검토하고, 보고서에 미소각 사유를 설명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6. 기재 이후

이렇게 기재된 내용은 시장의 평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027. 1. 1.부터 시행되는 개정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코드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가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점검하게 됩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도 2027년 의결권 행사 기준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2026. 11. 11.자 세종 뉴스레터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의 의결권 행사 기준 개정 동향」 참조). 이 개정안은 이사 정원·임기 등 이사회 구조가 집중투표의 실질적인 작동을 뒷받침하는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이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지 등을 함께 평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27. 2. 1.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사의 수나 임기를 바꾼 사유,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은 이유처럼 이번 개정으로 새로 보고서에 기재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가 직접 질의해 올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고서에 무엇을 어떻게 기재할지는 이러한 시각까지 염두에 두고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회사가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가 개시됩니다. 허위로 공시하거나, 오기재·누락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공시 요구(2025년 31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검토되므로, 기재 내용이 실제 운영과 어긋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IV. 맺음말

개정 가이드라인은 제도를 갖추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했는지까지 묻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이 '주주총회 2주 전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를 핵심지표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지금은 사유만 설명하면 되는 항목도 앞으로는 사실상 준수가 요구되는 항목으로 진화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두면 회사의 판단 근거를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에게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이후 주주총회에서 반대 권고를 받거나 반대표가 나올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2027년 정기주주총회까지의 일정과 의사결정 절차를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미리 설계해 두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비가 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기업지배구조전략센터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기재 내용 점검, 집중투표제와 전자주주총회를 고려한 주주총회 운영 및 정관 개정안 설계, 주주환원정책과 자기주식 처리, 기관투자자와 의결권 자문사 대응, 그리고 유상증자·분할·자회사 상장 과정에서의 주주보호 방안 등에 관하여 축적된 실무 경험과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구성원

이동건
대표변호사

02-316-4297
tglee@shinkim.com

이숙미
변호사

02-316-4016
smlee@shinkim.com

안효섭
수석전문위원

02-316-7264
hsann@shinkim.com

홍현표
변호사

02-316-4157
hphong@shinkim.com

윤태준
전문위원

02-316-7969
tjuyoon@shinkim.com

백상현
변호사

02-316-1774
shbaek@shinkim.com

최명
변호사

02-316-1798
mchoi@shinkim.com

Copyright SHIN & KIM LLC. All rights reserved.